

<의안번호 제2007-22호>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7. 5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7. 5.

2. 개정이유

사회적문제인 고령화 급진전과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 - 만65세 이상의 고령자(연 소득 1,200만원이하)가 소유하는 주택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,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중 담보된 주택)에 대해 재산세의 25% 감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7조, 제9조

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9조 제2항 제4호의 2

「한국주택공사법시행령」 제3조의 2 제2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06. 11. 13. ~ 12. 2.)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, 고용안정성의 약화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,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
- 2006년 2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확정된 이후 후속적 조치로써 2007년 4월 11일 관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동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역모기지론 제도와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

- 역모기지론(reverse mortgage loan)은 장기주택 저당대출이라고 하는데,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,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,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임.

-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(연간 소득이 1,2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한다)가 소유하는 주택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 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)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% 경감하도록 하고

-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조문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써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등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